

2022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안내

기획재정부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하여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중국산 침엽수 합판’, ‘베트남산 합판’,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품목분류 코드가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덤핑방지관세 제도

덤핑방지관세란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①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②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③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되는 경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 이하로** 부과하는 관세

II.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 제정

1. 제정이유

한국화학섬유협회는 ‘20년 11월 26일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무역위원회에 동 물품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였고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21년 01월 27일 이를 공고하였으며 조사를 거쳐 ’21년 11월 18일 동 물품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판정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결정 함

2. 부과대상 및 적용기간

부과대상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 (Polyester Filament Fully Drawn Yarn, FDY)	5402.47.9000	공포한 날부터 5년 (공포일:’22.01.06)

3.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3.95%~10.91% 으로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1\]](#)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HS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정비를 위한 4개 규칙의 일부개정

1. 개요

- (1)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바, 통관(通關)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품목번호를 달라진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등, ‘중국산 침엽수 합판’, ‘베트남산 합판’,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 등 4가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의 품목분류 코드 개정
- (2) 각 규칙 상 **품목분류 코드번호만** 개정되는 것일 뿐, **실질적인 부과대상 및 적용기간은 이전과 동일**

2. 개정규칙 및 사항

(1)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개정 前	개정 後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합판[세 개 이상의 단판(單板)을 층층이 쌓아 접착한 것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9.9000호, 제4412.99.6100호 또는 제4412.99.91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 ----- ----- ----- 제4412.39.9000호 또는 제4412.99.1000호 ----- ----- -----.

(2)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개정 前	개정 後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베트남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1호, 제4412.33호, 제4412.34호, 제4412.39호 또는 제4412.99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6밀리미터(mm) 이상인 것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 ----- ----- ----- 제4412.39호, 제4412.91호, 제4412.92호 ----- -----.

(3)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개정 前	개정 後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3701.30.91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포토폴리머 바이올렛판(Photopolymer Violet Plate), 재생판 및 더블레이어판(Double-layer Plate)은 부과대상 물품에서 제외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 ----- ----- -----제3701.30.2000호----- ----- ----- ----- ----- ----- -----

(4)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개정 前	개정 後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810.13.1000호, 제4810.14.1000호, 제4810.19.1000호, 제4810.19.9000호, 제4810.22.0000호, 제4810.2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1제곱미터당 중량이 55그램 초과 110그램 이하인 제품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 ----- ----- -----제4810.14.0000호----- ----- ----- ----- ----- ----- -----

(이하 여백)

IV. 2022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

번호	부과대상물품	공급국	세율(%)	적용기간
1	스테인리스 스틸바	일본·인도·스페인	3.51~15.39	'21.01.22 ~ '24.01.21
2	플로트판유리	중국	12.04~36.01	'21.04.23 ~ '22.04.22 (*재심사기간)
3	초산에틸	중국·일본·싱가포르	4.73~30.18	'18.11.19 ~ '22.07.08
4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필름	중국·인도	13.51~36.98	'19.01.13 ~ '22.09.10
5	합판	말레이시아	4.73~38.10	'20.05.08 ~ '23.11.05
6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일본	13.17	'20.07.14 ~ '23.07.13
7	합판	중국	3.98~27.21	'20.05.08 ~ '23.11.05
8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	중국·인도네시아· 태국	0~25.04	'18.12.20 ~ '24.08.22
9	침엽수 합판	중국	5.33~7.15	'20.03.11 ~ '23.11.05
10	초산에틸	인도	8.56~19.84	'18.11.19 ~ '22.07.08
11	도공(COATED) 인쇄용지	일본·중국·핀란드	5.9~16.23	'18.01.22 ~ '23.07.21
12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	중국	8.78~10.32	'20.09.07 ~ '26.05.02
13	페로실리코망간	베트남·우크라이나·인도	4.06~19.06	'17.05.31 ~ '22.11.29
14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필름	대만·태국· 아랍에미리트연합	3.19~60.95	'21.04.30 ~ '26.12.24
15	아연도금철선	중국	8.6	'18.08.14 ~ '23.08.13
16	스테인리스 스틸바	대만·이탈리아	9.47~18.56	'18.11.16 ~ '24.05.15
17	합판	베트남	9.18~10.65	'20.05.29 ~ '23.11.05
18	에이치(H) 형강	중국	28.23~32.72	'20.07.30 ~ '26.03.29
19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중국·인도네시아· 대만	7.17~25.82	'21.09.15 ~ '24.09.14
20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	중국	3.95~10.91	'22.01.06 ~ '27.01.05

* 재심사기간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 됨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붙임2]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정비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 Contact



김성근 관세사
T 070-4353-5152
E skkim2@esein.co.kr



하현준 관세사
T 070-4353-1514
E hjha@esein.co.kr

SEIN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2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